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황 지 태*

국 | 문 | 요 | 약

본고는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결과들의 부정적 결론과는 달리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재고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공식범죄통계자료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감소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피해조사상의 추세이다. 즉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가 감소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는 최근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이다. 그리하여 같은 기간 이루어진 치안인력의 확대가 범죄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감소에 비례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한편으로는 범죄 인지를 증가시켜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범죄기록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실제 범죄는 감소시키는 이중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 추정으로 귀결된다. 단, 이 때 치안인력 강화의 범죄억제 효과는 제3변인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분명치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던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 주제어 : 경찰, 치안, 범죄억제, 범죄율

1. 서론

범죄예방이 경찰활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사회의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력이 증가하고 경찰의 활동이 내실화되며 경찰 예산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범죄예방 역시 강화되고 그에 따라 그 사회의 범죄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이 상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어느 정도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찰활동의 개선방향과 관련된 많은 국내 연구들(김보환, 1989; 김상희 · 강대형 · 이태원, 1991; 이태원, 1991; 김형청, 1991, 2000; 경찰대학, 1992; 이상안, 1994; 이황우, 1994; 이상안 외, 1995; 정승호, 1995; 박병식 · 주희중, 1997; 김용환, 1998; 김수영, 1999; 유규창 · 남궁구, 1999; 노호래, 2000; 석청호, 2005)이 수행되어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범죄예방이 경찰활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결론, 즉 경찰이 범죄예방활동에 양적 · 질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은 적어도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의 순찰활동을 포함한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의 내실화가 범죄예방과 그에 따른 범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되는 경찰력의 양적 증대와 범죄율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극소수의 국내 연구들마저도 경찰력과 범죄율 증감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경찰력의 증가가 오히려 범죄율 증가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기광도, 1995, 2007; 노호래, 2006; 김창윤, 2009; Yoon & Joo, 2005).

이 중 후자의 연구결과들과 관련해서 경찰력의 증대와 범죄율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은 범죄가 증가한 만큼 경찰력이 증가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되어 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경찰력의 양적 증대와 질적 내실화²⁾가 모두 범죄예방과 범죄 감소에 전혀 혹은 거의 기여하지 못

2) 경찰력의 양적 강화가 범죄율 감소와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율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들은 모두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는 거의 줄곧 증가추세만을 나타내 보이기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론을 고수할 경우 경찰력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 역시 결국은 범죄율 증가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 전망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력의 양적·질적 내실화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력의 양적·질적 내실화가 범죄예방과 범죄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찰관수의 증대 혹은 그 수의 적정화나 경찰예산의 증대, 첨단 수사 장비의 도입 그리고 경찰의 순찰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찰활동의 효율화 및 내실화에 관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사실상 경험적 근거 없이 선험적 당위성으로 외쳐지는 공염불이 되고 그와 관련된 실천적 노력들은 시지포스(Sisyphus)의 바위덩어리 굴리기처럼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³⁾.

본고는 경찰력, 그리고 민간경비를 포함한 광의의 치안력의 양적·질적 내실화가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식이 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혹은 매우 불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했던 공식범죄통계와는 다른 종류의 통계자료들을 덧붙여 설명하고, 더 나아가 경찰력 또는 치안력의 양적·질적 내실화가 실은 실제로도 범죄예방과 범죄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상식을 조심스럽게 지지해 보고,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경험 연구결과들 사이의 괴리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이론적으로 당연해 보이지만, 그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경찰력의 강화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질서유지나 권력유지와 같은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력 혹은 치안인력의 강화 및 그 활동의 효율화가 반드시 범죄억제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미리 전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특히 범죄예방과 억제가 경찰활동의 주요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되고 있는 마당에— 경찰력이나 경찰활동이 어떤 정도로는 범죄예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 역시 없다고 판단한다.

있는 실정(기광도, 2001,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불일치로 인해 이 문제는 미국의 범죄학계에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왔다. 한편, 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자체가 희소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치안력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란 결론⁴⁾을 내놓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기광도, 1995, 2001, 2007; 노호래, 2006; 김창윤, 2009; Yoon & Joo, 2005).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예방과 범죄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하여 치안력 강화와 범죄예방(혹은 범죄억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험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 사이의 불일치는 —때때로 경험적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미국의 경우⁵⁾에서보다도— 훨씬 더 심한 편이라고 할 만하다. 그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본고에서 나름대로 설명하기에 앞서, 경찰력 혹은 치안력과 범죄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차례로 요약하여 그 불일치의 현황을 먼저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1)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에 관한 이론

경찰력이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식의 이론적 근거를 주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찾아보는 것(기광도, 1994, 1995, 2001; 노호래, 2006)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억제이론은 18세기에 전개된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기광도, 2001). 전반적으로, 억제이론은 사람들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범죄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costs)와 이익(benefits)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가정하며, 결국 그와 같은 가정에 의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가

4) 그나마 경찰력 강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순찰활동이 범죄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 전망을 내놓은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이 있기는 하나(임준태, 2002), 이 연구는 단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할 경우 실은 미국의 실험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아니다.

5) 외국의 경우에도, 경찰력의 범죄억제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한계들로 인해, 양자 사이의 관계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크면 클수록 범죄의 발생률은 더 낮아진다고 보는 이론이다(Liska, 1981, 장상희 · 이성호 · 강세영 역, 1986). 이러한 억제이론, 특히 엄격(severity)하고 신속(swiftness or celerity)하며 확실(certainty)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를 강조하는 고전적 형태의 억제이론은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상으로도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⁶⁾, 상황적 범죄예방론⁷⁾을 포함한 광의의 또는 현대적인 억제이론의 설득력은 여전히 간과하기 어려운⁸⁾ 것 또한 사실이다.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억제이론에 있다고 할 때, 그 억제이론은 엄밀히 말해 처벌의 강화가 범죄억제를 초래한다는 고전적 억제이론이라기보다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포함한 현대적 의미의 범죄억제이론에 좀 더 가깝다고도 할 수

6) 억제이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억제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죄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충동적 범죄유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둘째, 억제이론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셋째, 처벌의 범죄 억제효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기광도, 1994). 특히 강한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해 처벌은 실제로는 범죄를 억제하기보다는 범죄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라는 주위 사람들의 낙인 때문에 오히려 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본다고 주장하는— 낙인이론(labelling theory)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Tannenbaum, 1938; Becker, 1963; Lemert, 1967). 다른 한편, 특정 조건(예를 들어, 처벌이 불평하다든지 비합당할 때)에서의 처벌은 이후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들도 제기된 바 있다(Tyler, 1990; Kinsey, 1992; Sherman, 1993).

7)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논리는 범죄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기광도, 1994; 노호래, 2006). 이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는 범죄 목표물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target hardening), 범죄 목표 건물 출입인을 확인하는 것(entry-exit screenings), 범죄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target removal), 범죄 목표물 접근을 통제하는 것(access control), 경찰의 순찰을 포함한 공식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formal surveillance),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surveillance by employees),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removing inducement), 범죄촉진요인을 통제하는 것(controlling facilitators), 자연감시요인을 확대하는 것(natural surveillance) 등이 포함될 수 있다(Clarke, 1992).

8) 처벌의 엄격성 혹은 강한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의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적어도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의 경우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Tittle, 1969; Logan, 1972; Tittle & Rowe, 1974; Greeken & Gove, 1975),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Waldo and Chiricos, 1972; Silberman, 1976; Erickson et al., 1977; Jensen et al., 1978)은 적지 않다. 상황적 범죄예방론과 관련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목표물의 물리적 · 심리적 장애가 범죄를 줄일 수 있다거나(Brown & Altman, 1983), 범죄표적물의 주거환경 및 방비강화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Newman, 1973; Jeffery, 1977)이 존재하기도 한다.

있다. 특히 고전적 억제이론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처벌의 엄격성(severity)은 경찰의 활동영역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신,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처벌의 신속성 및 확실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중 처벌의 신속성은 경찰의 순찰활동과 연결되고,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의 체포활동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노호래, 2006). 이에 덧붙여 경찰인력의 확대에 따른 범죄발생 사전 감시(surveillance) 능력의 확대, 그리고 경찰예산의 증가와 그에 맞물린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장비의 첨단화는 한편으로는 처벌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범죄의 상황적 예방(혹은 범죄기회 요인의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력의 범죄예방 및 범죄억제에 관한 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력 혹은 치안인력의 증가가 범죄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논의는 크게 나누어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혹은 일반억제효과, general deterrence effect)와 특별 범죄예방효과(혹은 특별억제효과, special deterrence effect)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기광도, 2007).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는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 사전에 범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이다. 이는 경찰력의 증가, 경찰활동의 강화, 첨단장비의 도입 등이 범죄에 대한 체포 및 제재의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그와 같이 높아진 체포가능성이 잠재적 범죄자에게 인지될 경우— 결국 범죄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Ehrlich, 1973; Phillips & Votey, 1972). 이와 같은 설명에는 잠재적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행동한다는 전제, 즉 범죄행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범죄행위를 사전에 포기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특별 범죄예방효과는 —이른바 무력화 효과 내지 구금효과(incapacitative effect)라고도 일컬어짐— 경찰의 범죄자 체포활동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구금으로 인한 격리가 —적어도 격리기간 동안에는 구금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기광도, 2001; 이운호, 2002). 하지만, 경찰활동의 강화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도 그것이 범죄자의 체포의 두려움에 의한 억제효과에 의한 것인지 구금에 의한 무력화효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Blumstein et al., 1978), 설령 구금효과에 의한 범죄감소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효과일 수 있다⁹⁾(Visher, 1987). 그러한 비판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구금에 의한 범죄자 무능력화는 일부 범죄자들의 경우 구금되어 무력화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의미 있는 범죄억제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이윤호, 2002).

경찰력 강화의 범죄예방효과를 옹호하는 이론적 입장에서는 상황적 범죄예방론을 포함한 현대적 억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비판, 가령 범죄대체현상(displacement of crime)론과 같은 비판적 논의에 대한 반박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범죄대체현상은 특정지역의 방범체제가 확고하여 범죄행위가 어려워질 경우 범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Gober, 1981), 그에 따라 방범체제가 견고해진 지역에서의 범죄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범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범죄대체효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Cornish & Clarke, 1987)과 함께 더 공세적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확산(diffusion of benefit)효과(즉 범죄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방범체제가 취약한 인근지역에서도 범죄가 감소되는 효과)에 관한 주장(Clarke, 1995)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경찰력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및 비억제론의 논리

앞서 소개한 논의와 억제이론적 기본 가정에 따를 경우, 경찰력 및 경찰활동의 강화는 범죄통제력을 향상시켜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활동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제하여 결국 그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그 가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미국에서 실시된 몇몇 경험적 연구들 중에서는 경찰력 및 경찰예산 강화 등

9) 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이 범죄의 학습이나 낙인의 영향 등으로 누범화(혹은 범죄경력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범죄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Visher, 1987).

이 어느 정도라도 범죄억제효과를 초래한다는 결과들이 때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Jones, 1974; Wellford, 1974; Swimmer, 1974; Wilson & Boland, 1978). 그러나 이 연구결과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거나 다소 불분명한 결과를 보여준 경험적 연구들도 출현하여(Skogan, 1976; Jacob & Rich, 1981; Loftin & McDowell, 1982) 결과적으로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를 초래한다는 이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 10개 도시에서의 30년간(1948-1978)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된 연구에서는 10개 도시 중 6개 도시에서 경찰활동의 증가가 오히려 범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고(Jacob & Rich, 1981), 디트로이트(Detroit)시에서의 50년간(1926-1977)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도 경찰력이 범죄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Loftin & McDowell, 1982). 경찰력 강화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여 경찰의 체포활동의 범죄억제효과 및 경찰 순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 등을 각각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때로는 체포활동이나 순찰활동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Sjoquite, 1973; Wilson & Boland, 1978, Trojanowicz, 1982), 반대의 결과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Greenberg et al., 1982; Kohfeld & Sprague, 1990; Marvell & Moody, 1996, Kelling et al., 1974).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엔 경찰력과 경찰활동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희소한 편이다. 그나마도 체포활동이나 순찰활동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다만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적인 경찰력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몇 편 있을 뿐이다(기광도, 1995, 2007; 노호래, 2006; 김창윤, 2009; Yoon & Joo, 2005). 이 연구들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때로는 경찰력 증가와 범죄 증가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광도의 연구에서는 1964년부터 1992년도까지의 공식범죄통계와 경찰인력의 추세 사이의 시계열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형법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인력의 증가가 형법범죄 감소에 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전체범죄 및 특별법범죄에서는 오히려 경찰인력의 증가가 범죄율의 증가와 크게 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기광도, 1995). 다음으로 노호래가 수행했던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공식범죄와 경찰인력 사이의 분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정 시기 및 특정 지역에서의 경찰력 증가와 범죄율 사이의 분석을 행한 것이란 점에서 기광도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력의 증가가 공식적인 범죄건수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노호래, 2006)에서는 기광도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김창윤의 연구는 그 주된 목적이 우리나라의 민주정부시대(1993-2007)의 공식범죄발생 추세분석이지만 연구의 내용 중에 그 기간 동안 증가된 경찰력과 공식범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경찰력의 증가로 인해 반드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창윤, 2009). 윤옥경과 주희종의 연구의 경우는 앞의 연구들과는 크게 다르게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많은 변인들을 포함한 가장 정교한¹⁰⁾ 형태의 시계열분석 연구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분석 결과 경찰력 증가와 범죄율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의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마찬가지로 하겠다(Yoon & Joo, 2005).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기광도의 연구(기광도, 2007)에서도 — 이 역시 종속변인이 공식범죄통계였음 — 대체로 그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력이 범죄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상의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는 이를 충분하게 지지해 줄 만한 일관된 성과들이 축적되지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와 같은 이론적 가정을 지지해 줄만한 연구결과가 사실상 없었고, 오히려 때때로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율의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과 경험의 불일치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론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론 자체는 타당한데 어떤 다른 외부적 교란 요인들 때문에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 이론적 가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들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논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0) 이는 경찰력 증가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순수효과 내지 상대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 설계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미국 10개 도시에서의 경찰력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즉 10개 중 6개 도시에서 경찰력 강화가 오히려 범죄율을 높였다고 보고한 연구에서의 설명 논리는 이렇다. 경찰력 혹은 경찰활동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범죄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인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 설명 논리의 핵심인데, 결론적으로 말해 그 경우 경찰활동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은 실제 범죄가 아니라 경찰활동에 의해 높아진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이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을 증가시켰다는 설명¹¹⁾이다(Jacob & Rich, 1981).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그 연구가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디트로이트(Detroit)시에 관한 연구(Loftin & MvDowell, 1982)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연구들(기광도, 1995, 2007; 노호래, 2006; 김창윤, 2009; Yoon & Joo, 2005)은 모두 공식범죄통계를 토대로 수행된 연구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들 중에서도 경찰력 강화가 —어쩌면 실제 범죄가 아닌—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들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기광도, 1995; 노호래, 2006; Yoon & Joo, 2005). 한편,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의 연구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측면이나 사회정치적 과정에 대한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Loftin & McDowell, 1982). 이는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만 치중하여 경찰력 이외의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기광도, 2001). 즉 범죄율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3변

11) 이를 경찰의 생산성효과(police productive effect)라고 하기도 한다(기광도, 2001). 경찰력이 증가하면 시민들은 범죄 검거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게 되어 범죄 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고, 경찰 자체로서도 충원된 인력 및 자원을 통하여 자체 범죄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고된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신고된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의 감소)진다. 그 때문에 경찰력 증가는 “가시적”(숨은 범죄를 제외한 범죄라는 의미로 해석) 범죄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Swimmer, 1974; Wilson & Boland, 1978; Jacobs & Rich, 1981). 따라서 경찰력 증가에 의해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은 실제 범죄의 증가와는 다른 “인지된 범죄(공식적으로 기록·처리된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O'Brien, 1996)도 가능해진다. 참고로,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의 경우에도 그것이 시민들의 범죄신고 의지의 적극화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rojanowicz, 1982).

인(예컨대, 실업이나 빈곤, 사회적 불평등, 가족해체 문제 등)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을 경우 경찰력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억제이론 및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경찰력과 범죄율간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또는 동시결정적(simultaneously determined) 관계로 설명하는 논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경찰력 강화의 범죄억제효과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잠재적 피해자의 합리적 선택, 즉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극소화하려는 선택이 경찰력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는 경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력의 범죄억제효과와 함께 범죄의 증가가 경찰력의 확대를 초래하는 효과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나타난다는 것이다(Ehrlich & Mark, 1977).

위의 세 가지 설명은 그나마 경찰력의 범죄억제효과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과 양립될 수 있는 설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혹여 실제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거나 범죄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제3변인이 개입되거나 하는 등의 결과로 실제로는 경찰력이 범죄억제에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율이 상승하는 것처럼 착각되거나 다른 요인의 영향력의 상대적 우위성에 의해 실제 범죄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들과는 달리, 경찰력의 범죄억제효과 및 억제이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이론의 효용성을 큰 폭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설명들도 존재한다. 이에선 억제이론에서 전제하는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도 포함될 것이다(기광도, 2001). 억제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개인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범죄자들은 처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높아진 범죄비용에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이운호, 2002). 그리고 만약 실제 사회 내 개인들이 억제이론에서 가정하는 것만큼 충분히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면, 억제이론의 가정에 근거한 경찰력의 범죄억제 효과 역시도 그 자체로 의문시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앞서도 잠깐 언급한 범죄대체효과에 대한 설명도 경찰력의 범죄억제 효과를 부정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경찰의 활동은 범죄동기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찰활동의 강화는 단지 범죄의 장소와 대상 등의 대체효과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체포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 직면한 범죄자는 덜 위험한 범죄유형과 방법, 대상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될 경우 덜 위험한 범죄대상은 그만큼 범죄수익도 적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야 할 수도 있게 된다¹²⁾. 그렇다면, 경찰력의 증가로 인한 범죄비용의 증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범죄를 더 증가시키게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게 된다(기광도, 2001, 기광도, 2007).

3. 경찰력 및 치안인력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검토

앞의 논의에서는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일반적인 상식은 물론 억제이론에 토대한 이론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외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그러한 상식과 이론적 가정을 크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 특히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자료를 보충하여 기존 선행 연구들이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 즉 경찰력 강화의 범죄억제효과는 없다거나 있더라도 불분명하다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이견(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강화는 범죄억제 및 범죄감소에 기여해왔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논의)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상,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체포활동, 구금효과 등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실증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연구에 앞서 보다 기초적인 논의의 수준에서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증대가 전반적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론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논리 속에는 이들이 사용한 범죄 측정치가 모두 공식범죄통계였다는 비판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물론 그러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들 스스로도 인정하였던 당시 연구상의 제약이기는 하다.

12) “backfire effec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맞불효과”로 번역(기광도, 2007)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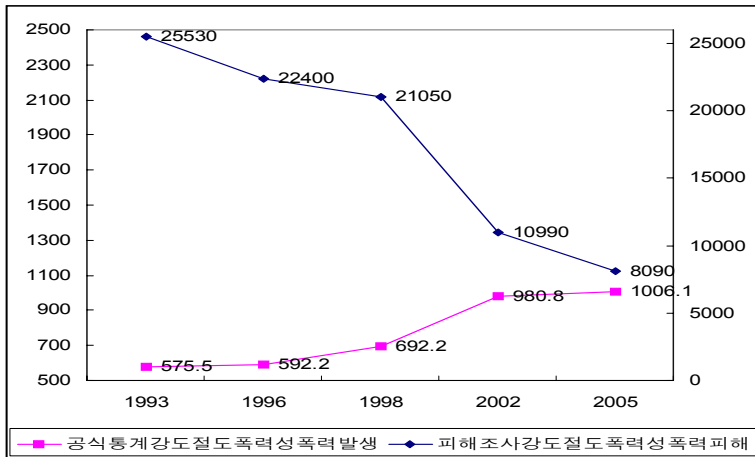
하지만, 그러한 인정은 단지 불확실한 하나의 가능성 수준에서의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았고, 그 연구들의 결론 자체를 거의 뒤엎거나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 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던 기광도의 연구에서조차도 “만일 실제 범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공식범죄율의 증가현상은 경찰에 의한 인지 범죄가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기광도, 1995)라는 다소 막연한 단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는 그 연구들이 그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떠한 일말의 증거자료도 갖추고 있지 못했거나 그 증거자료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식범죄통계는 오로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된 범죄들만의 통계이다(Savitz, 1982; O'Brien, 1985; Schneider & Wiersema, 1990; 김준호 · 이동원, 1991; 황지태, 2009). 따라서 신고 등에 의해 인지되고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리된 범죄만 증가하여도(혹은 다른 말로, 범죄압수가 줄어들기만 하여도) 실제 범죄와는 무관하게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광도가 언급했던 대로(기광도, 1995),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증가율과는 달리 실제 수준의 범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 증가는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인지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범죄가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증거까지 확보될 수 있다면, 치안인력의 강화가 실제 범죄억제 및 범죄감소에도 기여했을 가능성마저도 열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범죄율의 추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공식범죄통계 자료 이외에 우리나라의 실제 범죄추세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실시했던 범죄피해조사(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가 있다(최인섭 · 박순진, 1995; 최인섭 · 기광도, 1998; 박순진 · 최영신, 1999;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그런데, 이 조사들에서는 —비록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범죄에 국한된 조사자료이기는 하지만— 같은 기간 공식범죄통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주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범

죄피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³⁾(<그림 1> 참조).

〈그림 1〉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대비



(인구 10만명당 강도·절도·폭력·성폭행 발생건수 및 피해인원)

범죄피해조사 뿐만 아니라, 1993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실시된 바 있는 사법기관신뢰도 조사 자료 속의 전체 범죄피해율 역시 감소하였고(김지선, 1993; 최인섭·이천현·박형민·황지태, 2004), 1990년, 1999년, 2008년 3회에 걸쳐 실시된 청소년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지속적인 범죄피해율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1991;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1999; 홍영오, 2008).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범죄피해 추계조사에서 모두 범죄피해율 감소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같은 기간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준의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그 기간 동안에

13) 어떻게 같은 기간에 공식범죄통계는 증가하고 실제 범죄 추정치는 감소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식범죄통계의 증가 추세와 범죄피해조사의 감소 추세 중 어느 것이 실제에 가까운 추정치인가에 대한 설명은 황지태의 논문(황지태, 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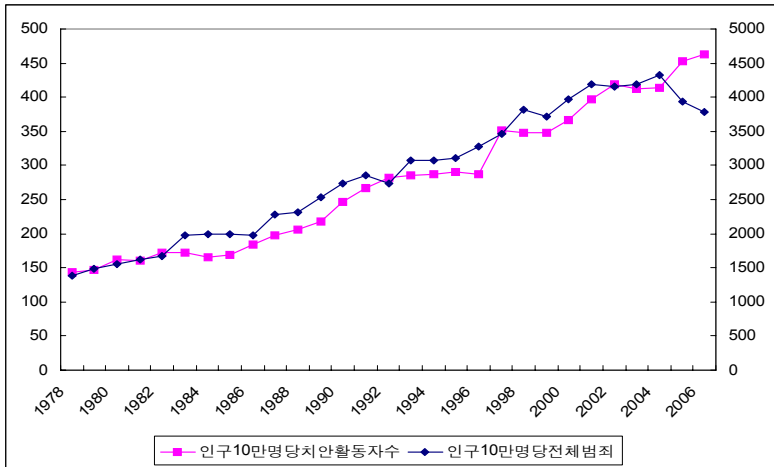
14) 세 가지 종류의 추계조사에서 모두 피해율 감소추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제 범죄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조사 역시 일정정도의 오류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신고를 포함한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그에 따라 범죄압수가 급속히 감소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추세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자료들이 존재한다(황지태, 2009).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현상, 즉 공식범죄통계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실제 범죄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범죄 인지의 증가와 함께 기록상의 공식범죄통계량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를 감소시키는 억제효과를 발휘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단, 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범죄율 감소에 기여했을 만한 요인들은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확대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안인력 확대 요인이 범죄억제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대답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 공식범죄의 증가와 동시에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것이란 설명이 옳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그림 2>¹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치안인력의 확대가 공식범죄통계량의 증가와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현상과 관련해 그 현상이 치안인력 확대에 따른 범죄 인지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게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표본수(대략 2,000사례)도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범죄피해조사결과와 표본수와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 오류가능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적들(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 최인섭·황지태, 2004)과 그러한 지적(오류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결과상 나타난 대략적 추세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의들(박순진, 2000, 2003; 황지태, 2009)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들(앞의 괄호 안의 문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15) <그림 2>에 나타난 “치안활동종사자수”는 경찰관수와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수를 합친 것이다(황지태, 2009). 그리고 여기서 경찰관수와 민간경비업체 종사자수에 대한 자료는 김성언의 논문 내용(김성언, 2004)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로, 기광도의 연구(기광도, 1995)에서는 경찰관수와 전체 범죄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였던 것에 비해, 윤옥경과 주희종의 연구(Yoon & Joo, 2005)에서는 경찰력과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윤옥경과 주희종의 연구에서 양자 사이의 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1990년대 이후 경찰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대신 민간 경비업체 종사자수가 급증한 현상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황지태, 2009), 경찰관수와 민간 경비업체 종사자수를 합친 다음 양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일 경우 <그림 2>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림 2〉 치안활동종사자수와 전체범죄 공식범죄통계



실제 범죄가 공식범죄율과 그 추세가 서로 상반되어 나타날 정도로 괴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림 2>에 나타난 치안인력과 공식범죄율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해 그것이 주로 범죄증가에 따른 치안인력의 확대 결과 때문(기광도, 1995)¹⁶⁾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이 매년 실제 범죄율 증가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경찰력 증가분을 계산할 수가 없다. 결국 아무리 정교한 계산이라고 해도 그 계산의 토대는 결국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일 수밖에 없다(이용규, 1991). 게다가 심지어 공식범죄통계에 기반한 계산일지라도 하더라도, 경찰이 <그림 2>에서처럼 완벽할 정도로 공식범죄율에 비례할 만큼 정확하게 경찰력 증가분을 계산하기도 힘들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성장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여러 개의— 민간경비업체들과 사전에 미리 합의하여 경찰력 증가분을 계산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인지된 범죄들만의 통계라는 공식범죄통계의 속성상 공식범죄율과 실제 범죄 사이에 괴리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방향성이 같은 경우)이기만 하면, 실제 범죄 증가에 따른 경찰력 확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긴 하다. 하지만, 공식범죄율과 실

16) 기광도는 경찰력과 공식범죄율 사이의 시계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양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찰관수가 늘어난 효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기광도, 1995).

제 범죄가 비례하는 관계가 아닐 경우엔, 아무리 계산을 정확히 하더라도 실제 범죄 증가분과 크게 유리된 치안인력 증가분만을 계산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범죄증가로 인한 치안인력 확대 결과로 해석하고자 할 경우엔, 결국은 기껏해야 어떤 가상의 수치에 기반하여 경찰력을 증가시키고 그 경찰력 증가로 인해(그로 인한 범죄인지 능력 향상에 의해) 가상의 수치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가상의 수치에 기반하여 다시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과정¹⁷⁾을 반복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설명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경우, <그림 2>와 같은 현상은 치안인력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 인지 증가에 의해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치안인력 확대가 실제 범죄억제에 미쳤을 수 있는 영향력의 문제로 되돌아가 보기로 하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치안인력의 꾸준한 확대 과정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가 아니라— 실제 범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치안인력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 시기 범죄를 감소시켰을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황증거자료들을 통해 추정되기도 한다(황지태, 2009). 또한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범죄자의 비합리적 행위 가능성과 범죄대체효과 가능성도 여전히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문제(치안인력 증대가 범죄억제 혹은 범죄감소에 미치는 순수효과에 대한 의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차후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정교한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안인력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몇 개의 추세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 그것이 실제 범죄추세를 반영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치안인력의 확대가 실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기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17) 물론 그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가상의 수치는 현실의 수치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는 범피압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공식범죄통계치가 점점 더 실제 범죄발생량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는 말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 치안인력 강화가 실제 범죄억제 및 범죄감소에 어느 정도 순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당장에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정황자료들은 치안인력 강화가 실제 범죄억제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 정황자료들은 주요 범죄의 초범 감소 추세와 관련된 것들이다.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동안 줄곧 범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만 나타났던 공식범죄통계에서조차도 초범자수 통계만은 특정시기 이후(대략 1980년대 중반 혹은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대략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특정 시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제 범죄가 감소하는 과정이 주로 초범의 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초범의 감소 추세가 경력범의 감소 추세보다 훨씬 급격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황지태, 2009). 초범의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더 급격하게 나타났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인간의 합리적 선택 가정에 토대한 억제이론의 장단점과 관련해 이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이득과 손해를 따져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잃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잘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범죄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경력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법행위의 적발 가능성”에 대해 경력범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도 높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 사회에서 치안인력이 확대되고 첨단 치안장비가 증가하여 “불법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이는 우선적으로 잠재적 초범들의 범죄행위 억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초범에 대한 범죄억제효과에도 불구하고 경력범의 1인당 범죄량이 범죄대체효과 등에 의해 증가하여 전체 범죄량은 오히려 늘어날 개연성도 여전히 배제하지만은 못할 것이긴 하다. 하지만, 초범의 감소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력범의 인구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범죄억제효과만으로도 장기적인 범죄율 감소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고는 경찰력을 포함한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와 범죄감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결과들의 부정적 결론과는 달리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재고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공식범죄통계자료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감소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피해조사상의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가 감소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는 최근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특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진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실제 범죄율을 반영할 개연성이 높다는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 같은 기간 이루어진 치안인력의 확대가 범죄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감소에 비례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한편으로는 범죄 인지를 증가시켜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범죄기록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실제 범죄는 감소시키는 이중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귀결된다. 단, 이 때 치안인력 강화의 범죄억제 효과는 제3변인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분명치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판단은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예방 혹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던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치안인력의 강화가 범죄예방 및 범죄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 중 하나에서는 경찰력의 확대와 장비의 첨단화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와는 다른 방향의 경찰활동 강화를 시도하여 “예방효과”를 증가시키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는데(노호래, 2006), 필자가 보기엔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에 의한 판단을

고수할 경우엔 그 어떠한 형태의 경찰활동 개선 노력도 “예방효과”를 제대로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 범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가 증가하고 있는 기간(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식통계와 실제 범죄의 추세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는 모든 기간)에는 그 어떤 형태의 경찰활동의 개선도 범죄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본고에서 치안인력 확대가 범죄예방 혹은 범죄억제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연성 있는 근거자료제시를 통해 열어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더 많은 것은 분명하다. 치안인력의 확대, 치안장비의 첨단화가 범죄예방 혹은 범죄억제에 미칠 수 있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경찰활동의 개선이 범죄예방에 미칠 수 있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을 개발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한 연구방법들이 개발되어야만 특정한 경찰활동 개선 노력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경찰활동의 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연구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비교적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작업들은 범죄피해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가지 경찰활동 개선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 내 범죄피해조사와 특정 지역 내 경찰활동의 변화 시도를 결합한 실험설계를 시도해 볼만도 하다. 물론 그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참고문헌

- 경찰대학, 1992, 『경찰순찰 활동의 발전적 개선방안』, 경찰대학.
- 기광도, 1994,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이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26호 : 21-31.,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5, “경찰의 범죄억제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0호 : 45-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1,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겨울호, 통권 제48호) : 113-14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개괄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5-19., 한국피해자학회.
- _____, 2007,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 255-287.,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김보환, 1989, “효율적 범죄통제를 위한 방법체제의 개선: 도시경찰을 중심으로”, 『치안논총』 제6집, 치안연구소.
- 김성언, 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 · 강대형 · 이태원, 1991, 『과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수영, 1999, 『경찰의 범죄예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환, 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 김준호 · 노성호 · 오수정 · 장은숙, 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1993, 『사법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도의 실증적 고찰』, 미출간 자료.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김창윤, 2009,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 : 민주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통권 제37호) : 129-167., 한국공안행정학회.

김형청, 1991,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2000, “지역사회와 방법활동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 367-399., 한국공안행정학회.

노성호 · 김성언 · 이동원 · 김지선, 199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호래, 2000, “파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 37-74., 한국공안행정학회.

_____, 2006,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예방효과간 상관관계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 제4호 (통권 제25호) : 45-77., 한국공안행정학회.

박병식 · 주희종, 1997, 『파출소근무제도 및 순찰활동개선방안』, 치안연구소.

박순진, 2000,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2000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학회.

_____, 2002,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21-38, 한국피해자학회.

_____,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 107-127., 한국피해자학회.

박순진 · 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철현, 2002,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 : 자료수집방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65-80., 한국피해자학회.

석청호, 2005, “순찰지구대의 순찰활동효과성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 191-225., 한국공안행정학회.

유규창 · 남궁구, 1999, “경찰의 야간대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5집 : 1-111., 치안연구소.

이상안, 1994, “경찰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 『제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치안연구소.

- 이상안 외, 1995, “파출소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11집 : 53-119., 치안연구소.
- 이순래, 2002,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사표의 문항구성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39-63., 한국피해자학회.
- 이용규, 1991, “경제적 불균형과 인종다원주의의 역기능 : 범죄와 경찰의 증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 985-1000., 한국행정학회.
-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 개정판, 박영사.
- 이은국, 1997,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인력규모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3집 : 1-100., 치안연구소.
- _____, 1998,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인력규모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제23집 : 96-121.,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 이태원, 1991, “예방경찰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호 : 32-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항우, 1994,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 (가을호, 통권 제19호) : 47-7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준태, 2002,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4호 : 159-197., 한국공안행정학회.
- _____, 2003, 『범죄통제론』, 도서출판 좋은세상 경찰학총서.
- 정승호, 1995,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이천현 · 박형민 · 황지태, 2004, “우리나라 형사사법 운용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I] —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황지태, 2004, “범죄피해율 감소 원인에 대한 검토 : 2002년도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 5-23., 한국피해자학회.

- 홍영오, 2008,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2009,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Becker, H. S., 1963,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 Free Press.
- Blumstein, A., J. Cohen & D. Nagin, 1978,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 Estimating the Effect of Criminal Sanctions on Crime Rates*,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 Brown, B. B. & I. Altman, 1983, "Territoriality, Defensible Space and Residential Burglary : An Environmental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 203-220.
- Clarke, R. V., [eds.] 199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Successful Case Studies*, Albany, New York : Harrow and Heston.
- _____, 1995, "Situational Prevention", in M. Tonry & D. P. Farrington [eds.] *Building a Safer Society :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19. Chicago, Illinoi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rnish, D. B. & R. V. Clarke, 1987, "Understanding Crime Displacement : An 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Criminology* 25 : 933-947.
- Ehrlich, I., 1973,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1(3), May/June.
- Ehrlich, I. & R. Mark, 1977, "Fear of Deterr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6 : 293-316.
- Erickson, M., J. P. Gibbs & G. F. Jensen, 1977, "The Deterrence Doctrine and the Perceived Certainty of Legal Punish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 305-317.

- Gober, T., 1981, "The Crime Displacement Hypothesis : An Empirical Examination", *Crime Delinquency* 26 : 390-404.
- Greeken, M. R. & W. R. Gove, 1975, "Deterrence :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Law and Society Review* 9 : 497-513.
- Greenberg, D. F. & R. C. Kessler, "The Effect of Arrests on Crime : A Multivariate Penal Analysis", *Social Forces* 60 : 771-790.
- Jacob, H. & M. J. Rich, 1981, "The Effects of th Police on Crime : A Rejointer", *Law and Society* 16.
- Jeffery, R. C., 197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Jensen, G. F., J. P. Gibbs & M. Erickson, 1978,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Social Forces* 57 : 57-78.
- Jones, F. T., 1974, "The Impact of Crime Rate Changes on Police Protection Expenditures in American Cities", *Criminology* 11.
- Kelling, G. et al., 1974, "Introduction", in *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 A Theoretical Report*, Police Foundation.
- Kinsey, K. 1992, "Deterrence and Alienation Effects of IRS Enforcement : An Analysis of Survey Data, in J. Slemond [eds.], *Why People Pay Taxe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ohfeld, C. W. & M. Felson, 1976, "Demography, Police Behavior and Deterrence". *Criminology* 28 : 111-136.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 McGraw-Hill.
- Logan, C., 1972,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Imprisonment", *Social Forces* 51 : 64-73.
- Loflin, C. & D. McDowell, 1982, "The Police, Crime and Economic Theory : An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393-401.
- Marvell, T. B. & C. E. Moody, 1996, "Specification Problems, Police Levels and Crime Rates", *Criminology* 34 : 609-646.

- Newman, O., 1973, *Defensible Space*, New York : McMillan Publishing Co., Inc.
- O'Brien, R. M., 1985,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 CA : Sage.
- _____, 1996, "Police Productivity and Crime Rates : 1973-1992", *Criminology* 34 : 183-207.
- Phillips, L. & H. L. Votey, 1972, "An Economic Analysis of the Deterrent Effect of Law Enforcement on Criminal Activity",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63.
- Sampson, R. J. & J. Cohen, 1988, "Deterrent Effects of the Police on Crime : A Replication and Theoretical Extension", *Law and Society* 22 : 164-189.
- Savitz, L. D., 1982, "Official Statistics", pp. 3-15 in *Contemporary Criminology*, edited by Savitz, L. & N. Johnson, 1982, Johnson Wiley & Sons Ins. New York.
- Schneider, V. W. & B. Wiersema, 1990, "Limits and Use of the Uniform Crime Reports", pp 21-48 in *Measuring Crime*, edited by D. Mackenzie, P. Baunach & R. Roberg,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 A Theory of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445-473.
- Silberaman, M., 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 442-461.
- Sjoquist, D. L., 1973, "Property Crime and Economic Behavior : Some Empirical Results", *American Economic Review* 63.
- Skogan, W. 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Big-City Police Depart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 Swimmer, G., 1974, "The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 Some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Results", *Criminology* 12.
- Tannenbaum, F., 1938, *Crime and the Communit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Tittle, C. R., 1969,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Social Problems* 16 : 409-423.
- Tittle, C. R. & A. Rowe, 1974,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 A Further Test of the Deterrence or Hypothesis", *Social Forces* 52 : 455-462.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Trojanowicz, R., 1982, *An Evaluation of the Neighborhood Foot Patrol Program In Flint, Michigan*.
- Visher, C. A., 1987, "Incapacitation and Crime Control : Does a Lockem up Strategy Reduce Crime?", *Justice Quarterly* 4 : 513-543.
- Waldo, D. A. & T. G. Chiricos, 1972, "Perceived Penal Sanctions and Self-Reported Criminality : A Neglected Approach to Deterrence Research", *Social Problems* 19 : 522-540.
- Wellford, C. R., 1974, "Crime and the Police : A Multivariate Analysis", *Criminology* 12.
- Wilson, J. Q. & B. Boland, 1978, "The Effect of the Police on Crime", *Law and Society* 12 : 367-390.
- Yoon, O. K. & H. J. Joo, 2005, "A Contextual Analysis of Crime Rates : The Korean Case", *Crime, Law and Social Change* 43 : 31-55.

A Study on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Police in Korea

Hwang, Ji-Tae*

This paper aims to rethink over negative results of existing all (and not many at the same time) studies about the criminal deterrent effects of police in Korea. The basis of such rethink is the results of criminal victimization survey in Korea. It is different from the method of analysis of existing Korean study on the same subject. Their ground of negativ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bout the deterrent effects of police was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data without exception. But for recent decade or more, the trends of official statistics crime rates in Korea have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e trends of victimization survey data in Korea. While the official statistics showed increasing rates since early 1990s to the mid of 2000s, the victimization data indicated rather decreasing rates. According to recent study on which are the more accurate reflection of reality, the probability that the trends of victimization survey data are the truth is higher than that of official statistics. Accepting such recent study, this paper suppose that the increase of police power have correlation to the decrease of crime rate, not the increase of crime rate,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subject. Within such supposition, it is possible to think that the increase of police power bring about the increase of official criminal statistics crime rate by means of improving police's ability of detection of hidden crime, simultaneously the increase of police power contribute to the decrease or deterrence of real crime. However, there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about the pure deterrent effects of police, because of problems of controlling the third variables.

❖ Key words : Police, Security, Deterrence, Crime Rate

투고일 : 2010. 2. 5 / 심사(수정)일 : 2010. 3. 3 / 게재확정일 : 2010. 3. 23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